

# 한세예스24홀딩스(주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권한)**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  
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요건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2장 구 성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  
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  
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**제6조(소집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알리고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7조(소집절차)**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의일 직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**제8조(결의방법)**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 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(부의사항)**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1조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4장 기타**

**제12조(간사)**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**제13조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 한세예스24홀딩스(주)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권한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1.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계획
2. 지속가능경영활동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
3.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관리
4. 기타 지속가능경영 관련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## 제2장 구 성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이상, 사내이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‘위원’)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  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  
③ 위원장의 유고 시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**제6조(소집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.  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,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7조(소집절차)

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  
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8조(결의방법)**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 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4장 기 타**

**제11조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 한세예스24홀딩스(주) 경영위원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세예스24홀딩스(주)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한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 (권한)**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, 심의 및 결의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구 성

**제4조 (구성)**

-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**제5조 (위원장)**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**제6조 (소집)**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,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**제7조 (소집 절차)**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8조 (결의방법)**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 (부의사항)**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건당 자기자본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투자에 관한 사항
- ② 건당 매출액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계약의 체결
- ③ 건당 자산총액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자산의 취득
- ④ 건당 자기자본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자금차입이나 보증행위
- ⑤ 건당 자기자본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기타  
담보제공행위

(\*각 재무결산기준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)

#### **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.

#### **제11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**제12조 (통지의무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3조 (이사회와의 관계)**

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# **제 4 장 기 타**

#### **제14조 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